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를 통해 친환경농어업법 내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 감축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개요

◎ 도입배경

-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

◎ 주요 인증기준 및 인증관리

- (인증기준) 사료에 항생제·성장촉진제 등 첨가 금지, 질병취약시기 외 동물용의약품 사용 금지, 축사 및 사용자재 등에 합성농약 사용 금지, 축산물에서 합성농약은 불검출, 동물용의약품은 잔류허용기준의 1/10 초과 금지 등
- (인증관리) 농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60여개의 민간인증기관에서 관리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및 개정

-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조항을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근거 등 11개조를 신설

- 그리고 수수료, 벌칙 등 기존 축산법 상의 5개조를 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 경과조치 및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 삭제 등을 규정

① 신설 : 11개조

제42조의2(인증근거), 제42조의3(인증절차), 제42조의4(유효기간), 제42조의5(준수사항), 제42조의6(표시방법), 제42조의7(인증취소), 제42조의8(인증기관), 제42조의9(부정행위), 제42조의10(사후관리), 제42조의11(승계), 제42조의12(준용-인증기관 운영)

② 개정 : 5개조

제49조(수수료),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2조(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제53조(벌칙), 제56조(과태료)

③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용어 삭제) 등

◆ 개선사항

- 축산법 이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학계 등 전문가, 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되면, 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형행과 같은 기준을 계속 유지하되, 농약사용 등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 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명칭과 부합하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농가에게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국내 항생제 사용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 친환경농어업법과 축산법 개정안 조문 비교표

친환경농어업법	축산법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2조의5(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제42조의6(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준용 ×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제25조(동등성 인정)	준용 ×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의8(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의2(인증심사원)	준용 ○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준용 ○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준용 ○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준용 ○
제28조(인증업무의 휴업·폐업)	준용 ○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준용 ○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2조의9(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3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준용 ○
제32조의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준용 ○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제42조의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제56조(수수료)	제49조(수수료)
제57조(청문 등)	준용 ○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1조(권한의 위임 위탁)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벌칙)	제53조(벌칙)
제62조(과태료)	제56조(과태료)